

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7조(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1. 계약목적
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입소노인 관리 및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함이다.
- 직원의 자질 향상과 경제적 도움 및 물질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해준다.
-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.

2. 이용계약

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.

3. 계약서류

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.

- 1) 장기요양인정서 1부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
- 2)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
- 3)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.

4. 계약기간

- 1)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인증유효기간까지로 한다.
- 2)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3) 서의성노인복지센터(주간보호)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수급자(또는 보호자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이후 15일 이내 서의성노인복지센터(주간보호)에 회신 하여야 한다.
- 4)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.(단 센터 정원이나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.)
- 5)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이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- 6) 수급자(또는 보호자)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5.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

- 1)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비용은 기관장이 정한다.

- 2)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.
- 3)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 한다.
- 4)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 한다.
- 5) 비급여 항목 안내
-서의성노인복지센터(주간보호)에서는 별첨 1호와 같이 비급여 항목을 운영하고 해당 내용은 입소 계약 시 보호자에게 안내한다.
(별첨 1호 비급여 안내서 참조)

6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1) 신원인수인의 권리

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
-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및 급여제공범위, 이용비용 등에 대해 설명과 정보를 요구할 권리
-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, 본인부담금 내역, 납부확인서 등을 제공받을 권리
- ③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, 프로그램 내용, 건강·식생활·상담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
-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, 생활환경, 안전관리 등에 대해 필요한 요구나 의견 제시를 할 권리
- ⑤ 수급자의 생활공간 및 이용환경은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범위 내에서 기관과 협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- ⑥ 기관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과 관련한 특이사항 공유, 건의, 보호자회의 참석의 권리
- ⑦ 표준약관과 기관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면회, 외출, 전원 또는 퇴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⑧ 급여제공 과정에서 사고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, 관계 법령 및 표준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상 또는 조치를 요구할 권리

2) 신원인수인의 의무

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-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, 진단내용, 복용약, 생활환경 변화 등을 기관에 정확히 알릴 의무
-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 이용요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할 의무
- ③ 주소, 연락처, 대리보호자 등 인적사항이 변경될 경우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
- ④ 장기출장, 질병 등으로 보호자 역할수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고 기관에 알릴 의무
- ⑤ 수급자를 통해 과도하거나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으며, 직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
- ⑥ 수급자의 행위로 인해 시설 비품·기자재 등이 오손·파손·분실된 경우, 기관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 또는 실비 배상할 의무
- ⑦ 급여제공 직원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, 관련 사실이 있을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

7. 계약의 해제

- 1)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

통보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입소(이용) 신청서, 건강정보, 가족관계 등 계약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
- ② 이용요금(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)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
- ③ 반복적인 납부 지연 등으로 지급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
- ④ 보호자(신원인수인)가 전원, 진료, 감염병 예방, 건강관리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
- ⑤ 수급자의 행위 또는 보호자의 관리소홀로 인해 시설·비품·건물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손·파손·멸실된 경우
- ⑥ 장기간 무단결석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이용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⑦ 다른 수급자에게 위해를 주는 폭언·폭행·성희롱·성적 문제·사고 유발 등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
- ⑧ 감염병 진단 또는 법령상 격리·입원 등의 사유로 기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⑨ 제공된 이용안내 및 급여제공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거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
- ⑩ 기타 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

2) 전항에 따라 계약해지가 통보된 경우, 신원인수인(보호자)는 수급자의 신병을 즉시 인수하고 퇴소·전원 조치를 협조하여야 한다. 이를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기관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 또는 강제퇴소를 진행할 수 있다.

3) 이용 중 센터 및 타 수급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, 민·형사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4) 계약해지 시 이미 발생한 이용요금 및 미수금은 정산하며, 선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한다.

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제8조(이용료, 이용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)

1.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, 납부방법 등

- 1) 이용료 : 이용료란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비용 산정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- 2) 기타비용 : 기타비용은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등으로 이용자(보호자)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납부방법 : 납부방법은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등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 달 2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계좌번호 : 농협은행 351-0835-8240-13 서의성노인 복지센터로 납부(입금)하여야 한다.

2.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

1)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-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
-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
- ③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정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
- ④ 기관의 비급여 비용이 변경된 경우

2)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.
-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, 감경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.
- ③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, 그 내용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.
- ④ 비급여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, 변경 적용 전월 말일까지 입소자·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한다.